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006 발의연월일: 2021. 8. 11.

발 의 자:이정문・김병기・김철민

문진석 · 민형배 · 박상혁

서영석 · 안민석 · 임호선

황운하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바 이를 마련하고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개정('09.12.29)으로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독립기념관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명시함(안 제6조제1항).
- 나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

사 선임절차에 맞추어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절차 중 공공 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 과정을 생략하여 비상임이사 선임절 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(안 제7조제3항 등). 법률 제 호

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독립기념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8호(종전의 제7호) 중 "제6호까지의"를 "제7호까지의"로 한다.
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
제7조제3항제4호 중 "추천하여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(이하 "공공기관운영위원회"라 한다)의심의·의결을 거친"을 "추천한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"를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우영위원회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업무) ① 독립기념관은 제1	제6조(업무) ①
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	
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
	와 관련하여 국가, 지방자치
	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
	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
	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<u>7.</u> 제1호부터 <u>제6호까지의</u> 업무	<u>8.</u> <u>제7호까지의</u>
에 딸린 업무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임원) ①・② (생 략)	제7조(임원) ①・② (현행과 같
	<u>수</u>)
③ 관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	③
각 호의 사람이 된다.	<u>.</u>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<u>추</u>	4 <u>추</u>
천하여 「공공기관의 운영에	<u>천한</u>
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공	
공기관운영위원회(이하 "공공	
기관운영위원회"라 한다)의	
<u>심의·의결을 거친</u> 사람 중에	
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는	

사람 8명 이내

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<u>공공기관운영</u>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

4
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
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
· ⑤ (현행과 같음)

⑤ (생략)